



이태형 국제위원장
(주)청운건축 전무
tedhlee@unitel.co.kr

技術用役債權의 消滅時效

(Statute of Limitations of Engineer's Professional Services)

Q 지난 외환위기 당시 수행했던 구조설계용역 중 일부 미수된 것이 아직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용역 미수금의 경우는 어찌되는지요? (J 구조 K소장)

A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의 진실한 권리관계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권리의 발생과 소멸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특히 관리자가 관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 그 권리소멸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여 우리 민법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존재 이유는 사회 질서의 안정 및 유지, 입증곤란구제 관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며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91다 32053)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①관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②관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③관리자의 권리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는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과 채권으로 한정되며, 일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민법 제162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3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제166조) 기한을 정한 계약의 경우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거나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시효가 진행하나 도급공사의 경우에 공사의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로서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는 용역성과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종료된 때, 감리·자문계약의 경우 사무위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기타 인허가 업무 대행을 포함한 계약의 경우 그 대행 행위를 종료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의 진행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채권자나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중단되므로(제168조) 용역미수금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전 법원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서 다른 강력한 중단방법을 취하기전 예비적 임시 조치로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를 중단 시킬수 있으나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제174조)

이때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삽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되는데(제178조) 특히 재판상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제165조)

이러한 소멸시효를 계약에 의해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184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78다2157)하여 절대적 소멸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영미법에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지적전문가의 Professional Services는 Common Law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우리민법과 같이 계약위반행위시부터 기산되거나 그 기간은 각 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주마다 상이 합니다. **KSEA**

※ 본란은 우리회원 주변에서 일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극히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게재한 것으로 개별적 특수한 상황은 법률회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 자문이 필요합니다.